# -직원품위유지 위반 등 언론보도 건-특정감사 결과보고

□ 감사기간 : 2015. 1. 5. ~ 1. 6.(2일간)

□ 감사인원 : 2명

□ 지적사항 : 5건 (중징계 3, 경징계 1, 통보1)



# <u>목 차</u>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기관	1
3. 감사기간 및 인원	1
4. 감사 중점사항	2
Ⅱ. 감사결과	2
1. 총평	2
2. 지적사항 총괄	3
3. 분야별 지적사항	3
4. 기타 조사사항	6
5. 감사심의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6
6. 감사자 의견	7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1
Ⅳ. 개별 처분요구사항	11
1. 품위유지 및 제 규정 위반	12
2. 업무 관리감독 소홀 등	15
3. 직원 복무관리 및 제 규정 준수 철저	17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 3부.

### Ⅰ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특정감사는 『직원 품위유지 위반 등』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해당기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목적으로 하였음.

#### □ 언론보도 개요

⊙ 일 자: 2015.01.01.(목) ~ 01.02.(금)

**○** 매 체: 신문사(○○일보 등 12사), 방송사(○○○ 등 4사)

○ 제 목: 『공기업인 대한지적공사 종무식, 카드도박으로 얼룩』

#### O 내 용:

- 공기업인 대한지적공사(LX공사) 직원들이 일과시간(14:50)에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힘
- 70여만 원 판돈을 걸고 카드도박을 한 ○○○본부 ○○○○지사 직원 A(57)씨 등 3명 불구속 입건
- 종무식 후 회사를 무단이탈, 점심식사 후 식당 방안에서 문을 잠그고 도박
- 공기업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도박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도리를 망각한 행위

#### 2. 감사대상 기관

○ ○○○○본부 ○○○○지사

####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15.01.05.(월) ~ 2015.01.06.(화) / 2일간

○ 감 사 반 : 감사실 국토정보직2급 ○○○ 외 1인

#### 4.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언론보도에 따른 "직원 품위유지 위반 및 복무규정 등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하였음.

#### O 복무규정 및 제 규정 준수

-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경위
- 품위유지 위반(도박)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ㅇ 특이사항 발생에 따른 조치
  - 사건발생에 따른 조치내용의 적정성
  - 언론보도 방지를 위한 노력 등 확인
- O 기타 확인사항
  - 해당 경찰관서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
  - 검·경찰관서의 향후 처리일정 등 파악

## Ⅱ 감사결과

#### 1. 총평

- 2014.12.31.(수) ○○○○본부 ○○○○지사 팀장급 직원 3명이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도박행위(카드도박)를 벌인 사실이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국토정보공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공사 명예의 심각한 훼손과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복무규정」등 제 규정과 '공직복무관리 철저' 관련 「각종 지시사항」, 「CEO 특별지시」미 준수 및 업무관리 감독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 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기관별 직무교육과 선제적・예방적 감찰활동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구분	211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현지	제도	모범			
		통보	시정	개선	권고	회수	지급	중징계	경징계	문책		개선	사례 (건수)
건수	5	1	0	0	0	0	0	3	1	0	0	0	0

#### 3. 분야별 지적사항

3-1. 관련자: 국토정보직4급 ○○○(58세), 국토정보직 4급 ○○○(56세) 국토정보직4급 ○○○(51세) 이상 3명

#### 가. 근무지 이탈

- 관련자 3인은 2014.12.31.(수) 14:20경 근무시간에 사무실 인근(2분 거리)에 있는 『○○○○○』식당(월 1~2회 이용)으로 이동한 후 도박행위(카드도박)을 하던 중 ○○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 직원 소재파악을 지시받은 ○○○과장이 15:47경 ○○○과 통화한 후 사건경위를 지사장에게 보고한 시간인 15:50경 까지 약 1시간30분 가량 적법한 근태처리나 보고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음
  - ※ 근무지 이탈 시간을 당초 14:20~17:30분(3.0시간)에서 ○○○과 ○○○가 최초 통화 후 지사장에게 보고한 시간으로 조정 14:20~15:50분(1.5시간)

#### 나. 품위유지 위반(도박행위) 및 언론보도에 따른 공사 명예훼손

- 관련자 3인은 14:30경 식당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대화 중 화투 방석에 식당에서 보유한 카드가 있는 것을 보고 도박행위(카드 도박)를 시작하였음
- 14: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강력1반 소속 수사관 5명에게 현장 사진을 찍히고 판돈을 압수(금액: 64만원)당한 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다음 17:30경 사무실로 귀소
  - ※ 압수금액: 64만원(○○○ 14만원, ○○○ 10만원, ○○○ 지갑보유금 포함 40만원)

○ 관련자들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도박행위(카드도박)를 벌여 관할 경찰서로 연행된 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공사 명예의 심각한 훼손과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 1.성실의 의무: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품위유지의 의무: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
- 7. 직장이탈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7조 (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의 말 또는 행동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기강 확립 등 지시문서」: 1. 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 준수사항: 무단이석 금지, 도박 등 사행성 행위 금지[경영지원실-574(2014.01.21.)], 2. 복무기강 점검대비 철저: 부적절한 처신 및 언행으로 인한 물의 야기행위,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 해이[경영지원실-3455(2014.05.02.)]

#### □ 지사 종무식 겸 중식

- 일시/ 장소: 2014.12.31.(수) 11:50~13:00/ 중식당 『오 왕서방』
- 내 용: 직원 23명이 참석하여 덕담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치고 13:00 사무실로 귀소하여 오후시간 정상근무
  - ※ 식대는 더치페이(식대: 251,000원, 주류 주문 없었음), 결제 영수증확보

#### 3-2. 관련자: 지사장 국토정보직 2급 ○○○

#### 가. 업무 관리감독 소홀

○ 소속 직원 3명이 2014.12.31.(수) 14:20경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무실 인근(2분 거리)에 있는 『○○○○』 식당으로 이동한 후 도박행위(카드도박)를 하던 중 14:50경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17:30경 귀소한 사실이 있으며 ○ 이는 직원들의 복무 및 근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로서 평소 제 규정·규칙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직원교육과 이행을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직원 근무지 이탈 및 근무시간에 도박행위" 사실이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공사 명예의 심각한 훼손과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나. 특이사항 발생에 따른 보고 지연 및 조치부실

- 당일 15:50경 이석 직원 3명의 소재를 파악한 ○○○과장으로부터 사건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17:30경 기자와 통화 후 언론예보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17:50경 사건개요 등을 본부로 우선 유선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특이사항 발생 시 상급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 히 하여 결과적으로 초동대처가 미흡하였다.

「복무규정」제12조(특이사항 보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지사장등은 본부장에게, 본부 장은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사건발생에 따른 지사 차원의 대응 경위

- 17:30경 ○○일보 기자로부터 "도박 관련 경찰 조사내용 및 관련자들의 회사 내 지위"에 대한 전화를 받고 즉시 시청 기자실에서 면담, 언론보도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17:50경 사건개요를 본부 ○○○장에게 휴대폰으로 우선 보고 한 후 관련 직원들의 경찰서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19:35경 본부로 이례 사항 보고 조치

#### 4. 기타 조사사항

#### □ ○○경찰서 강력1팀 팀장 면담내용

- 일시/장소: 2015. 01. 05(월) 10:30~11:00/○○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
- 참석자: 4인( 공사 2인, 경찰관계자 2인)
- O 내 용:
  - 신고자 등 본 건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어 유감임
  - 사건당일 관련자에 대한 조서 작성을 마무리 하였으며, 1월 중 검찰에 불구속 기소할 예정임
  - 검찰의 인사철인 관계로 종결처리는 최소 3개월 소요될 것임
  - 피의자 심문조서는 조사중인 관계로 정보공개대상이 아님

#### 5.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 일시/장소: 1차: 2015.01.12.(월) 14:00 ~ 15:00 / 본사 3층 감사실 2차: 2015.01.21.(수) 18:30 ~ 19:00 / 본사 3층 감사실
- O 출석위워: 11명
- 의결내용

#### 가. 품위유지 및 제 규정 준수 위반 등

- 관 련 자: 국토정보직4급 ○○○(58세), 국토정보직 4급 ○○○(56세) 국토정보직4급 ○○○(51세) 이상 3명
- 의결사항: **중징계(정직)**

#### 나. 업무 관리감독 소홀 및 특이사항 보고 지연 등

- 관 련 자: 국토정보직2급 ○○○(56세) 이상 1명
- 의결사항: 경징계(견책)

#### 6. 감사자 의견

【경기지역본부 시흥광명지사 국토정보직4급 ○○○. 동 ○○○. 동 ○○○]

-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제1, 3, 7호에 따라 "직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된다. 제1호 성실의 의무: 업무 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호 품위유지의 의무: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 제7호 직장이탈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 또한「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제7조 (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의 말 또는 행동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 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무단이석, 도박 등 사행성 행위 금지를 지시[경영지원실-574(2014.01.21.)] 하였으며, 부적절한 처신 및 언행으로 인한 물의 야기행위,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지시[경영지원실-3455(2014.05.02.)] 하였고, 화상회의를 통한 「CEO특별 지시」등으로 직원 근무기강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은 연말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2014.12.31. (수) 14:20경 근무시간에 사무실 인근(2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한 후 도박행위(카드도박)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 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직원 이석에 따른 소재파악을 지시받은 ○○○ 과장이 사건경위를 지사장에게 보고한 시간까지(15:50) 약 1시간30분가량 적법한 근태처리나 보고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 또한 14:30분경 식당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대화 중 화투방석에 식당에서 보유한 카드가 있는 것을 보고 도박행위(카드도박)을 시작하였고 14: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강력1반 소속 수사관 5명에게 현장 사진을 찍히고 판돈을 압수(금액: 64만원)당한 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다음 17:30경 사무실로 귀소한 사실이 있다.
- 그리고 관련자들은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도박행위(카드 도박)을 벌여 관할 경찰서로 연행된 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공사 명예의 심각한 훼손과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직원품위 유지 및 제 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 따라서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 제3호(품위유지의 의무), 제7호(직장이탈 금지)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품위유지)와 「공직기강 확립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규칙」 제8조(징계의 양정) 〈별표 1〉 및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 제1호, 제4호에 따라 신분상조치(중징계: 정직) 처분하고자 함

#### 【경기지역본부 시흥광명지사 국토정보직2급 ○○○】

- 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무단이석, 도박 등 사행성 행위 금지를 지시[경영지원실-574(2014.01.21.)] 하였으며, 부적절한 처신 및 언행으로 인한 물의 야기행위,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지시 [경영지원실-3455(2014.05.02.)] 하였고, 화상회의를 통한 「CEO 특별 지시」등으로 직원 근무기강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 또한 「복무규정」제12조(특이사항 보고)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지사장등은 본부장에게, 본부장은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 3명이 2014.12.31.(수) 14:20경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무실 인근(2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한 후 도박행위(카드도박)를 하던 중 14:50경 시흥경찰서로 연행되어조사를 받고 17:30경 귀소한 사실이 있으며,
- 이는 직원들의 복무 및 근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로서 평소제 규정·규칙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직원교육과 이행을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직원 근무지 이탈 및 근무시간에 도박행위" 사실이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공사 명예의 심각한 훼손과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또한 당일 15:50경 이석 직원 3명의 소재를 파악한 ○○○과장으로부터 사건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7:30경 기자와 통화 후 언론예보 관련 사항을 파악, 17:50경 사건개요 등을 본부로 우선 유선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동대처가 미흡하였다.

○ 따라서 「공직기강 확립」관련 업무 관리감독 소홀과 「복무규정」 제12조(특이사항 보고)이행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지침」제5조(처분사유) 제1항 제1호 및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 제3호에 따라 신분상조치(경징계: 견책) 처분하고자 함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O 처분요구 현황

일련 교후 관계기관		III Q	처분요	비고		
번호	선계기선	내 용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미끄
1	○○○○본부 ○○○○지사	품위 유지 등 제 규정 준수 위반	중징계(정직)			3명
2	"	업무 관리감독 소홀 등	경징계(견책)			1명
3	○○○○본부	직원복무관리 및 제 규정 준수 철저		통보		1건

### **개별 처분요구 사항**

- 1. 품위유지 등 제 규정 준수 위반(국토정보직4급 ○○○ 외 2명)
- 2. 업무 관리감독 소홀 등(국토정보직2급 ○○○)
- 3. 직원복무관리 및 제 규정 준수 철저(○○○○본부 ○○○○○)

#### 붙임 명세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 3부. 끝.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3-1	3-1 감사자 ㅇㅇㅇ 외 1인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	재정상 조치방법	_	재정상 조치 금액	_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00000	처분요구일자	2015.01.	회신기일	20일

감 사 실 징계요구

제 목 품위유지 등 제 규정 준수 위반

관계기관 ○○○○본부 ○○○○지사

대 상 자 국토정보직4급 ○○○, 동 ○○○, 동 ○○○ 이상 3명

징계종류 중징계(정직)

징계사유

위 국토정보직 4급 〇〇〇은 2012.02.13.부터 2015.01.05.현재까지(동 〇〇〇: 2012.06.04.부터 2015.01.05.현재까지, 동 〇〇〇: 2013.03.04.부터 2015.01.05.현재까지) 〇〇〇〇본부 〇〇〇〇지사에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제1, 3, 7호에 따라 "직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제1호성실의 의무: 업무 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고 행동 등으로 조직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호 품위유지의 의무: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공직자로서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 제7호 직장이탈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제7조 (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의 말 또는 행동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무단이석, 도박 등 사행성 행위 금지를 지시[경영지원실-574(2014.01.21.)] 하였으며, 부적절한 처신 및 언행으로 인한 물의 야기행위,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지시 [경영지원실-3455(2014.05.02.)] 하였고, 화상회의를 통한 「CEO 특별 지시」등으로 직원 근무기강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정보직 4급 ○○○외 2명은 연말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2014.12.31.(수) 14:20경 근무시간, 사무실 인근(2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한 후 도박행위(카드도박)를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직원 이석에 따른 소재파악을 지시받은 ○○○과장이 사건경위를 지사장에게 보고한 시간 15:50까지 약 1시간30분가량 적법한 근태처리나 보고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또한 관련자들은 14:30경 식당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대화 중 화투 방석에 식당에서 보유한 카드가 있는 것을 보고 도박행위(카드도박)를 시작하였고 14: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강력1반 소속 수사관 5명에게 현장 사진을 찍히고 판돈을 압수(금액: 64만원)당한 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다음 17:30경 사무실로 귀소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도박행위(카드도박)를 벌여 관할 경찰서로 연행된 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공사 명예의 심각한 훼손과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직원품위 유지 및 제 규정 준수를 위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복무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1호(성실의 의무), 제3호(품위유지의 의무), 제7호(직장이탈 금지)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7조 (품위유지)와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 규칙」제8조(징계의 양정)〈별표 1〉 및 「인사규정」제45조(징계사유) 제1호, 제4호에 따라 관련자를 신분상조치(중징계: 정직)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3-2	감사자	000 외 1인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	재정상 조치방법	_	재정상 조치 금액	_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00000	처분요구일자	2015.01.	회신기일	20일

감 사 실 징계요구

제 목 업무 관리감독 소홀 등

관계기관 ○○○○본부 ○○○○지사

대 상 자 국토정보직2급 ○○○

징계종류 경징계(견책)

징계사유

위 국토정보직 2급 ○○○은 2014.01.24.부터 2015.01.05.현재까지 ○ ○○○본부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지사운영·관리 및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직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무단이석, 도박 등 사행성 행위 금지를 지시[경영지원실-574(2014.01.21.)] 하였으며, 부적절한 처신 및 언행으로 인한 물의 야기행위,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지시[경영지원실-3455(2014.05.02.)] 하였고, 화상회의를 통한 「CEO 특별 지시」등으로 직원근무기강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복무규정」제12조(특이사항 보고)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지사장등은 본부장에게, 본부장은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정보직 2급 ○○○은 소속 직원 3명이 2014.12.31.(수) 14:20경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무실 인근(2분 거리)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한 후 도박행위(카드도박)를 하던 중 14:50경시흥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17:30경 귀소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는 직원들의 복무 및 근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로서 평소 제 규정·규칙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직원교육과 이행을 위한 감독을 철저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직원 근무지 이탈 및 근무시간에 도박행위" 사실이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공사 명예의 심각한 훼손과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당일 15:50경 이석 직원 3명의 소재를 파악한 ○○○과장으로부터 사건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7:30경 기자와 통화 후 언론예보 관련 사항을 파악, 17:50경 사건개요 등을 본부로 우선 유선 보고한 사실이 있으나, 특이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동대처가 미흡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은 「공직기강 확립」관련 업무 관리감독 소홀과 「복무 규정」제12조(특이사항 보고)이행을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제5조(처분사유) 제1항 제1호 및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 제3호에 따라 신분상조치(경징계: 견책)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3-3	감사자	000 외 1인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_	재정상 조 치	_	행정상 조 치	1
수감부서 (처리할부서)	0000본부	처분요구일자	2015.01.	회신기일	1개월

감 사 실 통 보

제 목 직원복무관리 및 제 규정 준수 철저 관계기관 〇〇〇〇본부 내 용

「복무규정」제2조(준수사항) 제1, 3, 7호에 따라 "직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제1호성실의 의무: 업무 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고 행동 등으로 조직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호 품위유지의 의무: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공직자로서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 제7호 직장이탈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규정 제12조(특이사항 보고)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지사장등은 본부장에게, 본부장은 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제7조 (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의 말 또는 행동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무단이석, 도박 등 사행성 행위 금지를 지시[경영지원실-574(2014.01.21.)] 하였으며, 부적절한 처신 및 언행으로 인한 물의 야기행위, 근무지 이탈 등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지시 [경영지원실-3455(2014.05.02.)] 하였고, 화상회의를 통한 「CEO 특별 지시」등으로 직원 근무기강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지역본부 산하 시흥광명지사에서 2014.12.31.(수) 오후 팀장급 직원 3명이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도박행위(카드 도박)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관할경찰서로 연행, 조사 받은 사실들이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됨에 따라 공사 명예의 심각한 훼손과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본부장(○○○○장)**은 직원복무관리 및 행동강령 관련 규정과 각종 지시사항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